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4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2008년부터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역주민의 안전보호, 무질서 추방 등 지역의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나. 지역치안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범죄예방, 주민의 안전보호 등 관련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

업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요구 건의사항 등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
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 시의회의장, 시교육감, 지방경찰청장
이며, 위촉직 위원은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
단체장, 전문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함 (안 제4조)

다.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함
(안 제8조)

라. 협의회의 소집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마.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둠 (안 제10조)

바.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1조)

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규정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시의회 의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시 교육감”이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이하 “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지방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원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경찰법 제3조, 제1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淤)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경 찰 법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전문개정 2011.8.4]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1-22>

제3조 (일비등) ① 시·군·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매년 80,000천원 전·후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2013년도 예산도 100,000천원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김 기홍의원